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8. 25 선고 2021나223352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8. 25 선고 2021나223352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철원군법원 2021. 11. 11 선고 2021가소255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석, 박기옥

변론종결 2022. 6. 30.

판결선고 2022. 8. 25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1가소255 판결

주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3.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,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관련 법리

- 1)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.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6. 22.자 2018스18 결정).
- 2)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(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).

나. 인정 사실

피고는 2017. 7. 24. 원고를 상대로 이혼, 위자료,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(의정부지방법원 2017드합5639). 위 법원은 2019. 5. 1. 원고와 피고의 이혼 및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,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1억 1,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2019. 5. 23. 확정되었다(이하 ‘선행사건’이라 한다).

다. 구체적 판단

- 1)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 ‘피고는 선행사건 진행 당시 정기예탁금을 인출하여 현금 1,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숨겼다. 그 때문에 위 1,500만 원은 선행사건에서 분할대상

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다. 이는 이혼재판 확정 후 추가재산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,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’는 취지로 주장한다.

2) 이 사건 청구원인은 선행사건에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았던 재산에 관한

재산분할청구이므로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,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
3)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

하나(민사소송법 제419조), 이 사건 소는 재판상 이혼 성립일 또는 선행사건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난

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, 소가 이송되더라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.

따라서 항소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함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.

2. 결론

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였고,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.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심준보, 판사 김혜령, 판사 여규호